

경찰, 수사종결권 갖나 패스트트랙 항배 '주목'

검·경 수사권조정,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패스트트랙 지정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경찰, 혐의 유무 결론... 불송치 가능

검·경 수사권조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가운데, 해당 조정안 속에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그간 검찰 지휘를 받던 경찰은 독자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 환경을 갖게 되는 등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도 혐의 유무 1차 결론... 수사개시·진행·종결까지

지난 30일 정치권과 법조계·경찰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을 다룬 여야 4당의 개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 사법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현행 구조상 경찰은 수사는 하되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담아 이를 검찰에 보낼 수 있을 뿐이다. 검찰은 경찰 의견을 참고하거나 별도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다수의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즉, 자체적으로 수사 결론까지 낼 수 있는 권한까지 쥐게 되는 셈이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60일 한도 내에서 법적 검토를 마치게 된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종전처럼 사건을 송치한다.

경찰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확보했고, 이번에는 수사종결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개정안에서 검찰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법, 경찰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또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보유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경 갈등 종결될까... 보완수사·송치문제 등 불씨 가능성

하지만 이번 개정안 안에서도 향후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견해가 상당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정당한지'를 두고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경찰이 독주할 경우 시정조치나 징계 요구가 실질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실효성을 문제

삼는 시선도 있다. 반면 경찰이 경찰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검찰은 위법·부당 여부를 따져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증거 등에 대한 반환 기한을 60일로 제한한 것은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법적 검토 절차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경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찰에 우선권이,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는 영장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무리한 영장 신청·청구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경의 해묵은 갈등 대목이었던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불복 절차가 생겼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부안과는 달리 향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을 가진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피신조서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검찰 단계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이후 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수 있음을 뜻한다. 범인의 자백과 증거로 구성되는 수사 절차에서 '증거' 부분을 보다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시스

패스트트랙 동시 지정 공수처법 2건, 차이점은?

고위공직자 수사 초점 범죄 vs 부패 관·검사 등에 기소권 vs 기소심사위원회 권한 대통령 vs 독립된 수사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는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기존에 여야 4당이 발의한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안 모두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범죄사실 수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찰에 우선권이,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여야 4당 합의안과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범죄 행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큰 틀에 선 뜻을 같이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

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으로 한 데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권한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여야 4당 합의안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두고 있다. 반면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권 의원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할 여야 4당 합의안에 더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도 포함됐다.

이는 여야 4당 합의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것과 달리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데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권 의원 법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뒤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를 결정하기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뒤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합의안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바른미래당 안은 실질적 견제 장치가 필요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안은 독립된 수사처장(공수처장)이 수사처(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한다"며 "이는 여야 4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뉴시스



"패스트트랙 지정합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 개편안... 지역구 ↓ 비례 ↑

(정개특위)

300석 유지, '지역구 225·비례 75석'... 연동률 50% 적용

전국 6개 권역 나누고 석패율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난 30일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0시30분께 국회 정무회 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2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A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된다. A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30석에서 뺀 나머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되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무소속 당선자나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300석에서 제외한 후

할당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당된 비례의석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에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총 의석 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권역별 할당의석수를 먼저 적용한다. 여기서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빼고 나머지에 또 50% 연동률을 적용해 당선자를 특정한다.

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석패율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당별로 취약한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도 확대했다. /뉴시스